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62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민형배·양부남·소병훈

김문수・정동영・이개호

박지원 • 안도걸 • 박해철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들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위헌·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5조).

법률 제 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
	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